



제 42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 관련〉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68호)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66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안)	1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안)	3
II. 개 요	5
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5
2. 현행 국회의 경비·경호 체계	7
3. 해외 의회 경비 체계	11
III. 검토의견	14
1. 국회경호조직 개편 관련	14
2. 국회 안전을 위한 국회의장의 유형력 행사 근거 마련	25

I.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서미화 · 허성무 · 이수진 · 안규백 · 박정현 · 강선우
이연희 · 한준호 · 한민수 · 정을호 의원(10인)
 - 2) 제 안 일 : 2025. 2. 14.
 - 3) 회 부 일 : 2025. 2. 17.
- ※ 의안번호 : 816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소위 3선 경호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회의장 및 그 인근은 경위,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은 방호,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국회의장 공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호나 국회경비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3선 경호 체계의 업무분장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위,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각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및 제145조의2).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문진석 · 박정현 · 이건태 · 복기왕 · 이정문 · 장종태
박성준 · 박용갑 · 이재관 · 김문수 · 황명선 의원(11인)
 - 2) 제 안 일 : 2025. 2. 26.
 - 3) 회 부 일 : 2025. 2. 27.
- ※ 의안번호 : 846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 등은 행정부 소속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

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II. 개 요

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를 폐쇄하여 국회의원 및 직원의 출입을 봉쇄한 반면, 계엄군의 출입은 허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정부와 법원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해제요구권을 보유한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¹⁾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²⁾

- 1)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2)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은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를 비롯한 국회의 사무는 계엄사령관이 관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中]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기 중인지 여부 및 국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강화된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계엄해제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및 계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 ... (중략) ...

다른 한편, 피청구인은 질서유지 목적의 병력 투입이 국회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이라거나 집회·결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계엄법 제7조 제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부나 법원을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국회가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강화하여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국회의 사무는 계엄사령관이 관장할 수 없으며, 그 사무가 국회 내의 행정사무로서의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서 이들에 대한 최종 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³⁾

이에 서미화의원안과 문진석의원안은 입법부의 지위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국회 경비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현행법에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경비대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에 더하여 문진석의원안은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의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

둘째,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청사 내에서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서미화의원안),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금지(문진석의원안)할 수 있도록 함.

3)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폐쇄 시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체계는 경찰청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 순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에 대한 보고나 봉쇄 해제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2. 현행 국회 경비·경호 체계

가. 법적 근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경찰권(内部警察權)⁴⁾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⁵⁾을 보유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⁶⁾ 등의 형식으로 행사됨⁷⁾.

경호권은 「국회법」 제143조 및 제144조⁸⁾에 근거하여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이를 위해 국회에 경위(경호기획관실 소속 일반직 국회공무원)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함.

한편,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원가택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 권리로서 경호권과 달리 폐회 중에도 항상 행사할 수 있음. 국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급박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의장은 의원가택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경찰공무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

4)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방청인 등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실력으로써 직접 강제하는 권한

5) 회기에 관계없이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 내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내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

6)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7)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660

8)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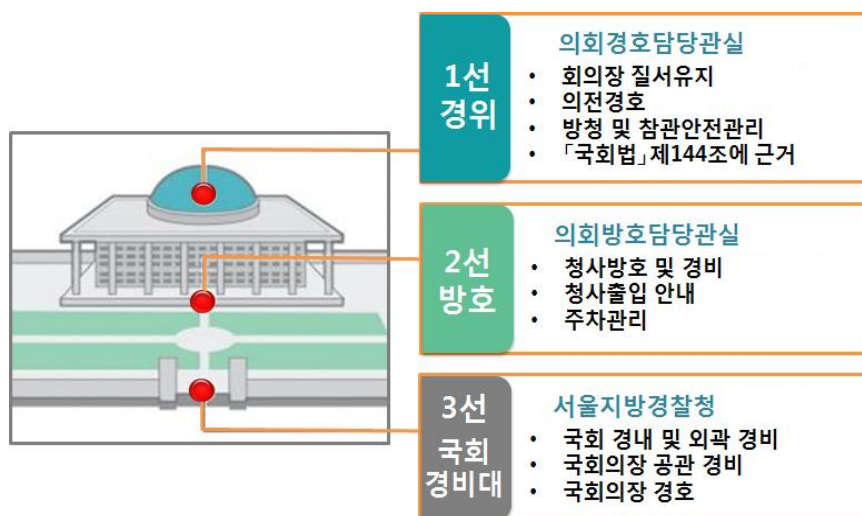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할 수 있음.⁹⁾

나. 현행 국회 경비·경호체계¹⁰⁾

현재 국회 경비체계는 3선으로 운영됨. 1선인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 방청 및 참관 안전관리 업무는 국회 경위가, 2선인 국회 경내 주요 건물에 대한 방호 및 경비, 청사출입 안내, 주차관리 업무는 국회 방호가, 3선인 국회의사당 경내 및 외곽경비, 출입문 경비, 국회의장 수행 경호 및 공관 경비, 국회 방문 주요 인사 경호 및 대테러 예방 및 안전 업무는 국회경비대(서울특별시경찰청)가 수행함.

[그림-1] 현행 국회 경비체계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 경위와 방호는 「국회법」 11) 및 「국회사무처 직제」 12) 등에

9)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662

10) 전진영,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제23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이상훈, 「국회 경호·경비제도 개선 방안 고찰」, NARS 간담회 발제문, 2024.,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함.

11)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12) 「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의2(경호기획관)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근거한 조직으로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반직 국회공무원(경위직·방호직)과 공무직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에, 국회경비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¹³⁾에 근거한 경찰공무원 조직으로 행정응원의 형식으로 국회에 배치되고 있고,¹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지휘를 받으나 주요 사항은 국회와 협의하여 수행 중임. 참고로, 국회경비대는 1951. 3. 22. 창설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장 산하에서 운영된 적은 없었으며, 2025. 2. 기준 국회경비대 현원은 123명임.

1. 국회의 경호 및 방호

2. 국회의 방청

3.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 출입증의 발급·관리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② 서울특별시경찰청 (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14) 일각에서 국회경비대를 국회 경비를 위해 “과건”된 경찰력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으나, 경찰력의 국회 배치는 「국회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상 과건이 아닌 「행정절차법」 상 행정응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표-1] 국회 경호 관련 조직 현황

(2025. 2. 1. 기준)

구분	국회사무처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
조직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의회방호담당관실 소속	대장(총경) 1명, 행정과, 경비제대(4개), 의장경호대
인원	경위직 69명	방호직 124명 공무직 40명	123명
주요 업무	-경호·방호 기본계획 수립 -본회의·위원회 경호 -외곽경비업무 협의·조정 -테러 예방·대응 등	-국회 청사 <u>시설의 방호 및 경비</u> -국회의사당 <u>경내 질서유지</u> -주차 관리 등	-국회 <u>경내 및 외곽 경비</u> -국회의장 경호 및 공관 경비

자료: 국회사무처

현행 국회 경비체계는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과 서울경찰청장으로 지휘권자가 나뉘어, 경호·경비의 기본원칙인 경호지휘단일성¹⁵⁾ 및 경호체계통일성¹⁶⁾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국회는 기습적인 시위나 질서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므로 경호·경비체계의 신속성·긴급성이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 지휘자의 빠른 결단과 일사분란한 명령 하달, 경호·경비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⁷⁾

15) 성공적인 경호조직을 위한 불가피한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경호요원은 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휘는 단일해야 하고 이를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함. 한편, 지휘의 단일성은 경호업무가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 등과 같은 긴급성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요구됨.

16) 구조의 정점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무수한 기준을 통하여 상하계급 간에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함을 뜻함.

17)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3. 해외 의회 경비 체계¹⁸⁾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경비 및 보안 업무는 의회경찰(U. S. Capitol Police: USCP)이 담당하고 있음. 의회경찰은 특별구역 경찰로서 연방 의회가 직접 선발하며, 수행 업무는 연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안전, 연방의회 지도부와 연방의회를 방문하는 국가원수·고위급 인사의 경호 임. 현재 의회경찰은 약 2,000명 규모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밖에 운영 및 행정직을 맡고 있는 350명의 일반인이 의회경찰대에 소속되어 있음. 의회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감시·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등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독일 연방의회는 사무처 산하 보안부서에 의회경찰(Bundespolizei)을 두고 있고, 의회경찰은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의 파견을 받아 운영해 왔으나 2013년부터 연방경찰의 협조 하에 자체적으로 일부 보안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의회경찰은 일반 경찰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명시적인 승인 하에서만 체포·수사를 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169명(사설 보안담당관 제외) 규모임.

프랑스 국민의회는 의회사무처 산하조직인 보안안전실(Reception, Security and Safety Division), 공화국 수비대¹⁹⁾ 의회 파견대, 소방 파견대, 경찰 등 복수의 조직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회 파견대 지휘관은 의장에게 보고의무가 있음. 경찰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방문객의 범죄이력 조회, 의사업무 방해 행위 감독 등의 업무

18) 전진영,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제23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함.

19) 프랑스 국가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 산하 조직으로, 파리에 있는 대통령궁(엘리제궁)과 국회의사당, 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의 경호경비를 담당함.

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사당 건물 외부 경호는 파리경찰국(내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영국 의회는 2016년 1월 의회경호국(Parliamentary Security Department: PSD)을 창설하였고, 의회 경내의 모든 안전 관련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의회경호국장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직속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총장의 관리 하에 있음. 한편, 의회 외곽은 특별임무 협약을 맺고 있는 특수경찰부대인 의회 및 외교 보호사령부(Parliamentary & Diplomatic Protection Command: PaDP)에서 담당하며, 현재 약 500인의 경호직이 근무하고 있음. 이들 경찰 인력은 의회경호국장의 지휘를 받음.

일본은 우리나라 국회와 마찬가지로 경위가 의회 내부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경찰관(동경 경시청 기동대 담당)은 의회 외부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의사당 내부의 경찰을 담당할 수도 있음. 경위가 소속된 경무부는 중의원과 참의원 사무처 아래 조직되어 국회 경호업무(원내 경비, 정부 요인 및 외국 국민 경호)를 수행하며, 경무부장은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음.

마지막으로, 캐나다 의회의 경우에는 2014년 의회경호국(Parliamentary Protective Service: PPS)을 창설하여, 의원·의회직원·방문객 보호, 의회 건물과 경내 경비, 의회 출입통제, 외곽경비, 경내 긴급상황 대처 및 의회 기념행사의 안전한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의회경호국장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 소속이나, 양원 의

장의 지휘를 받음.

종합하여 정리하면, 해외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의회 경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의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두고 있으나, 국가별로 경호·경비 체계의 구성, 외곽경비 업무의 자체 수행여부, 인력 충원방식 및 업무 수행절차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Ⅲ. 검토의견

1. 국회경호조직 개편 관련

가. 국회경비대 설치(서미화·문진석의원안)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국회경비대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경비대와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다만, 서미화의원안은 국회 경호 주체별 업무수행구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문진석의원안은 국회경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경찰공무원이 의장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2]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서미화의원안	문진석의원안
공통점	- <u>국회경비대 설치</u>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국회경비대 및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u>의장의 지휘권 규정</u>	
차이점	- 주체별 경호 수행 구역 규정 · 경위: 회의장과 그 인근 · 방호: 국회 내 건물과 그 인근 · 국회경비대: 국회 외곽과 그 인근, 의장 공관 ※ 현행 3선 경호체계와 동일	- 경비대 수행 업무: 국회 출입, 국회와 그 인근의 안전·질서유지 - 국회경비대의 장은 의장이 국회사무처 공무원 중에서 임명 -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 무기 사용 가능 - 파견 경찰공무원의 의장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대한 벌칙 신설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서미화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생략)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44조(경호 조직) ① - ----- -----경위·방호 및 국회경비대-----.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행하 되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위: 회의장 및 그 인근 2. 방호: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 3. 국회경비대: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의장 공관 ④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①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경비대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회경비대의 장은 의장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의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²⁰)에 따라 처벌한다. ⑥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장비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

현행	서미화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u> <u>⑦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지역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국회 경호·경비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부의 독립적인 경호·경비조직을 설치·정비하여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의 독자적인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는 ① 현행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관리권 확보, ②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 확대 개편, ③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 신설, ④ 청원경찰 활용, ⑤ 특수경비원 활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 중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20) 「경찰공무원법」 제37조(벌칙)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2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국회경비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입법취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서미화의원안은 현행의 3선 국회경비체계(경위-방호-국회경비대)를 법제화하고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경비대를 두고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원화된 경호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재 국회경비체계 개편과 관련한 다수의 제·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므로,²¹⁾ 서미화·문진석의원안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개정안의 입법취지, 장·단점 분석뿐만 아니라 유사 제·개정안과의 비교 등을 통해 국회 경호체계 개편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4] 독자적인 국회 경호·경비체계 구축방안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경찰에 대한 지휘권 확보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확립 가능	경찰청 소속 유지로 인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재발 우려
경호기획관실 확대 개편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가능	일반직 국가공무원 특성상 물리력 행사를 위한 조직법·작용법적 근거 보완에 한계 존재
경호·경비 조직 신설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및 국회경호의 독립성 확보 가능	· 조직법·작용법적 근거 필요 · 기관 설립에 따른 하위법규 정비, 인력 채용,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단시간 내 실현 어려움

21) 2025년 7월 4일 기준,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동 개정을 포함한 31건의 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건의 제정안(「국회 경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경위처법안」,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등) 등 총 36건의 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으로, 이들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 명시, ② 국회경비대, 국회경찰 등 국회경호조직 근거 마련, ③ 파견 경찰공무원의 국회 경호 근거 삭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구 분	장 점	단 점
청원경찰 활용	별도의 입법 불필요 (「청원경찰법」에 따라 가능)	· 청원경찰의 배치, 임용, 운영 등에 있어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많은 국가시설에서 청원경찰을 방호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부합하지 않음
특수경비원 활용	· 별도의 입법 불필요 (「경비업법」에 따라 가능) · 경비절감 가능	· 특수경비원 교육 및 직무수행에 대한 경찰 감독권이 여전히 존재 · 특수경비원의 신분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사기저하 및 높은 이직율로 전문성 저하 우려

자료: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를 참고하여 작성

둘째, 개정안의 발의배경과 취지를 고려할 때, 경호업무를 위해 경찰공무원을 파견받더라도 그 협조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소속 공무원이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제약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문진석의원안은 서미화의원안과 달리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의 장비·무기 사용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양 개정안 모두 질서 유지, 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 조치 등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각종 안전 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형력의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²²⁾

셋째, 문진석의원안은 국회의 출입,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국회경비대를 두도록 하면서 「국회법」 제144조²³⁾의 개정 또는 폐지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문을 추가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3)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

를 수반하지 아니하여,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국회경비대와 기존의 경비조직(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과의 관계 및 업무 분담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국회 경호·경비업무를 이원화된 체계로 수행할 경우에는 기관 간 업무 중복 및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국회경비대가 경호·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업무 이관 및 소속 직원의 승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현행법 및 관련 규정 등의 추가적인 정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문진석의원안 제144조의2제3항·제5항은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의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법」²⁴⁾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은 침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처벌 대상 행위, 행위 주체, 형사 처벌의 정도 등을 해당 법률에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24) 「경찰공무원법」

제37조(벌칙)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제24조 제2항 또는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24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이 바람직하므로, 파견 경찰공무원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근거는 타 법률을 인용하기 보다는 「국회법」에 직접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확인된 국회 경호·경비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인력, 예산, 경호·경비의 실효성 확보수단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찰청은 미국과 같이 입법부 소속으로 국회경찰을 선발·구성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국회의장 경호를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고 경찰관 파견의 경우 여전히 인사·예산권 등을 경찰청에서 보유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나. 무기 소지·사용의 근거 마련(문진석의원안)

문진석의원안은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또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제6항).

[표-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문진석의원안
<신 설>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⑥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경호 또는 질서유지 업무 특성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경비대가 장비나 무기²⁵⁾를 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국회경호조직 등의 무기 등 사용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경호업무 수행에 따른 공권력 남용 또는 과잉대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 사용의 요건과 한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5) 다수의 개정안은 “무기”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뜻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⑤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참고로, 대통령 경호처 직원, 경찰, 법원보안관리대 등 유사 직종의 무기·장비 사용에 관한 입법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6] 공무원의 무기 또는 장비 사용 관련 입법례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20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기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서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군사경찰에게 항거할 때
 -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군사경찰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 ② 군사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 사용을 야기한 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위의 정황상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그 상급 부대의 지휘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⑧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2. 국회 안전을 위한 국회의장의 유형력 행사 근거 마련(문진석·서미화의원안)

개정안은 회기와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국회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문진석의원안은 의장이 국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미화의원안은 국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경고하도록 하고 있음.

[표-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문진석의원안	서미화의원안
제143조(의장의 <u>경호권</u>) (생략) <신설>	제143조(의장의 <u>경호권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장은 국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제145조의2(청사의 질서 유지) ① 의장은 국회 청사 내에서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²⁶⁾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이 경호권²⁷⁾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 개정안은 회기와 관계없이 필요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의장의 질서유지권²⁸⁾을 구체화하거나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²⁹⁾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권한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한 행사과정에서의 모호성과 불안정성을 줄이고, 국회의 안전확보와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적인 법률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4

26)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27) 현행법상 국회의장의 경호권은 협의의 질서유지권인 내부경찰권 개념을 갖고 있음.

28)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9)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 권리로서 회기 중일 것을 요구하는 경호권과 달리 회기에 관계없이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 내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내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임. 이 역시 질서유지권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